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1029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OOODFDDFFD[redacted]
OOODFDDFFD[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9,574,400원, 지방교육세 4,922,880원, 농어촌특별세 2,4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가. 원고는 2016. 6.경 B으로부터 [redacted]남 [redacted]시 C 답 132㎡, D 답 102㎡, E 전 83㎡, F 답 159㎡(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G 임야 16,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778,000,000원에 일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34,560,000원(시가표준액 11,333,900원)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213,440,000원(시가표준액 47,221,380원)으로 각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임야	합계
취득세	1,036,800원	48,537,600원	49,574,400원
지방교육세	69,120원	4,853,760원	4,922,880원
농어촌특별세	69,120원	2,426,880원	2,496,000원
			56,993,280원

다. [redacted]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이 778,000,000원임을 확인하여 [redacted]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redacted]시는 2019. 5. 21. 원고에게 부동산거래가액 허위신고로 인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37,085,460원을 부과, 고지하여 원고는 2019. 6. 5.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2016. 7. 19. 취득신고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취득가액을 778,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23,012,360원(취득세 19,960,000원, 지방교육세 2,112,070원, 농어촌특별세 940,01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1]'의 감액(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1) 일괄 취득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각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하고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778,000,000원으로 일괄하여 설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과세표준을 1,248,000,000원인 것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취득가액은 778,000,000원이어서 원고는 이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에서 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를 실제로는 77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신고한 위 농지 및 임야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778,000,000원에 부합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신고가액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국세청 실지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상 거래가격으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인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

(다) 원고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착오나 오류에 의한 정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스스로 과다한 금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액으로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상 납세의무자가 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의 경정을 거부하는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여 허용되는지(최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이지 당초의 신고가액이 존재함에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정당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액이 경정됨으로써 원고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경정되기 이전의 신고가액이 그대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5항의 제한적, 한정적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2) 원고의 경정청구에는 '국세청의 실지조사에서 실제 취득가격이 밝혀져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실지조사로 실제 취득가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및 농지를 778,000,000원에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과다신고하였고, 이 점이 실지조사로 밝혀졌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과다신고한 오류가 있음을 경정사유로 삼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하는 이상 납세자에게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의 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드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피고의 위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최초에 스스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신고가액을 778,000,000원으로 경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회에 그 취득행위에서 드러나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추정하여 담세력을 부과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당초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778,000,000원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통상의 경정청구).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위 경정된 과세표준(신고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보유할 만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의 위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은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납세자의 경정청구 조문인 제50조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재하는 진실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위 경정청구조문의 신설 이전에는 신고납세의 신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과세관청이 그로 인한 지방세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를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나, 납세자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다납부된 세액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정청구조문의 신설취지, 위 조문에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자의 고의가 없을 것 등의 주관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가 고의로 과다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의 과세표준액을 높게 신고하여 과다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징,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 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7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끝.